

상생협력법상 규제 범위의 개선에 관한 고찰

홍명수*

논문요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상 거래 공정화를 위한 규제나 성과공유제와 같은 상생협력의 정책 실현은 모두 수탁·위탁거래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규제와 정책 실현의 대상으로서 단일하게 설정되어 있는 수탁·위탁거래에 대하여 일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상생협력법 제2조 제4호의 수탁·위탁거래의 개념은 거래 공정화 관점에서의 규제에 충실하게 정의하고, 동법 제8조에서 성과공유제의 실현 범위는 더욱 폭넓게 수탁·위탁거래를 파악하여 기초로 삼는 것과 같이 양자를 분리하는 방안도 유력한 접근 방식이 될 수 있다. 거래 공정화의 관점에서 상생협력법 제2조 제4호의 수탁·위탁거래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서 규제 대상을 정하는 것이므로, 동 개념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특성을 반영하여 규제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공정화를 위한 규제와 상생협력의 필요성이 단지 제조 과정에 한정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유통 과정을 규제 범위로 확장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동법 제8조의 성과공유제와 관련하여, 그 기초가 되는 수탁·위탁거래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도 존재한다. 즉 현행법은 수탁기업을 중소기업(중견기업까지 확대)에 한정하고 있지만,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성과의 공유 문제는 기업 규모 측면에서 구별하여 볼 것은 아니므로, 수탁·위탁거래 일반으로 확장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검색용 주제어: 상생협력법, 수탁·위탁거래, 수탁기업, 거래 공정성, 성과공유제

· 논문접수: 2020.01.05. · 심사개시: 2020.01.10. · 게재확정: 2020.01.23.

*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I. 서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이를 대폭 보완한 대체 법률로서 2006년 제정되었다. 동법의 제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 제정 이후 입법 취지 실현에 대한 기대에 부응할 만큼 동법이 기능하고 있는지, 동법의 제도들이 충분한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지속적으로 의문이 있었다. 그렇지만 드러난 문제점이나 제도적 흠결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의미 있는 수준의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하나로 상생협력법의 제도 운영에 있어서 기초가 되고 있는 수탁·위탁거래 개념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상생협력법은 제2조 제4호에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거래로서 수탁·위탁거래를 정의하고, 이에 기초하여 동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성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규제나 상생협력의 실현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즉 수탁·위탁거래는 상생협력법의 핵심적 개념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그 동안 동 개념이 상생협력법상 규제나 정책 형성의 기초로서 적절하게 정의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의하여 타당하게 규제 범위가 설정되고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하에서는 우선 수탁·위탁거래 개념에 기초한 상생협력법의 규제 대상이 적절한지를 상생협력법상 규제의 의의와 범위의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Ⅱ). 이어서 수탁·위탁거래의 단일한 개념에 기초하여 거래 공정화를 위한 규제와 상생협력의 정책적 기초를 제시하는 방식이 타당한지, 나아가 규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가능한 방식 등에 관하여 상론할 것이다(Ⅲ).

Ⅱ. 현행 상생협력법상 규제의 의의와 범위

1. 상생협력법의 목적과 정책 기초

상생협력법 제1조는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목적에 관한 동 규정을 통하여, 동법의 궁극적 목적이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인 동반성장의 달성에 있고, 이를 위한 정책 목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양극화 해소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동 규정이 목표의 실현 수단으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의 공고화를 제시함으로써 동법의 의의가 중소기업의 일

방적 보호가 아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적 관계의 구축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한 것이다.

또한 동법 제2조 제3호는 “상생협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에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상생협력법은 상생협력을 상호 이익 증진의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일방적 이익을 넘어서 대기업을 포함한 전체적인 이익의 증대를 낳을 수 있는 방향으로¹⁾ 정책이 추진될 것을 시사하고 있다. 나아가 그 범위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중소기업 간의 관계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을 요한다.

2. 상생협력법상 규제의 의의

상생협력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수평적 측면과 수직적 측면에서 모두 고려하여 법체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수평적 관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쟁자로 만나는 관계 그리고 수직적 관계는 제조·유통 과정에서 양자가 밸류체인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상징한다. 동법의 주요 구성은 제3장에서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제4장에서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 그리고 제5장에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관한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3장과 제4장은 대·중소기업의 수직적 관계 그리고 제5장은 수평적 관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써 대·중소기업관계를 상생협력적으로 형성하기 위하여 수평적, 수직적 측면에서 종합하는 법체계를 이루고 있다.

또한 수직적 관계에 대한 규율이 제3장에서 상생협력 촉진과 제4장에서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규제, 즉 협력 증진과 규제로 이원화되고 있는 점에도 주목을 요한다. 전자는 상생협력법 자체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며, 후자는 상생협력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일반 경쟁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외에 중소기업에 관한 정책을 전담하는 기관이 적절한 규제 담당자가 될 수 있다는 사고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²⁾

3. 수탁·위탁거래의 정의

-
- 1) 서완석, “중소기업의 보호와 대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법적 제도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30권 1호(2012), 51-52면 참조.
 - 2) 일본 중소기업청설치법 제4조 제7항에서는 중소기업청의 요구에 의하여 공정취인위원회가 독점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谷原修身, 「獨占禁止法の解説」, 一橋出版, 2006, 73면 참조.

상생협력법상 이원화 되어 있는 수직적 관계의 규율에서 구체적인 법 적용은 수탁·위탁거래를 대상으로 한다.³⁾ 상생협력법 제2조 제4호에서 수탁·위탁거래는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⁴⁾ 이와 같은 정의는 개념의 명확성을 기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동법에 의한 구체적인 규제 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동 규정에서 수탁·위탁거래는 거래 주체와 거래 내용 측면에서 정의되고 있다. 우선 거래 주체와 관련하여 위탁기업에 대해서는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것 외에 특별한 제한을 가하고 있지는 않다. 반면 수탁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일 것을 요구함으로써 수탁·위탁거래를 대·중소기업 관계의 틀에서 파악할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한편 동 규정은 수탁자인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위탁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후술하는 다른 거래 공정화 관련 법률에서 규제 대상인 거래를 정의하는 경우에 유사한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서 이때 요구되는 전문성의 의미에 대해서는 해석상 논의의 여지가 있다. 우선 동법이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기서의 전문성을 자격 요건으로 이해하여 수탁·위탁거래를 제한해서 볼 것은 아니다. 다만 일반적인 거래에서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업무위탁의 경우까지 규율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지나친 확장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동 규정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은 거래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위탁업무를 배제하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수탁·위탁거래를 정의하는 동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 될 것이다.

거래 내용 측면에서는 수탁기업에 대한 위탁의 내용을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로 제한하고 있다. 이상의 위탁 내용의 열거는 예시적이 아닌 한정적인 것이어서 그 자체로는 중요한 제한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열거된 위탁 내용의 범위가 넓고 개방적이어서 거래 내용 측면에서도 특별한 제한이 부과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유통 과정에서의 위탁업무 중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판매 위탁이 제외된 것에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다른 거래 공정화 법률의 규제 대상인 거래와의 구별

(1) 거래 공정화 관련 법률

3)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21조의 주요 근거가 되는 상생협력법 제8조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에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4) 동조 제5호는 위탁기업을 “제4호에 따른 위탁을 하는 자” 그리고 제6호는 수탁기업을 “제4호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상의 규정에 의하여 상생협력법상 거래 공정화를 위한 규제 대상이 수탁·위탁거래로 정해지고 있으며, 이로써 거래 공정화와 관련하여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⁵⁾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⁶⁾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⁷⁾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⁸⁾ 등에 의한 규제와⁹⁾ 구별되는 고유한 규제 범위를 갖게 되었다.

(2) 하도급법과의 구별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대상인 거래 중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는 상생협력법상 수탁·위탁거래와 마찬가지로 위탁관계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며, 따라서 양 법에 의한 중복 적용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도 주의를 요한다. 상생협력법 제26조 제1항이¹⁰⁾ 양 법률에 모두 위반되는 것을 전제로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 5) 독점규제법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의 위법성을 거래불공정성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에 관하여, 홍명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따른 위법성 판단- 불공정성을 중심으로 -”, 「경희법학」, 제50권 3호(2015), 48면 이하 참조.
- 6) 하도급법 제2조 제1항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공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공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공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 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 7) 대리점법 제2조 제1호 “대리점거래란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거래로서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를 말한다.”
- 8)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 9) 종래 독점규제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규제되어 왔지만, 별도의 법률을 통하여 규제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거래 공정화를 위한 개별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특히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하나인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위에서 언급한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이 제정되었다. 권오승·홍명수, “경제법학”, 「학문연구의 동향과 쟁점」, 제8집(2018), 751면 이하 참조.
- 10) 상생협력법 제26조 제1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기업이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양자의 중복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양자 사이에는 몇 가지 차이점도 존재한다. 우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수탁·위탁거래는 업무위탁의 수행에 있어서 수탁기업에게 명시적으로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와 구별된다. 그러나 이때의 전문성을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업무를 배제하려는 취지로 해석하고, 이에 따라서 전문성의 의미를 폭넓게 이해할 경우에, 이러한 제한을 부과하지 않는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와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규제 대상인 위탁의 내용 측면에서 하도급법은 위탁의 내용을 제조, 수리, 건설, 용역의 위탁으로 정함으로써 상생협력법상 수탁·위탁거래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¹¹⁾ 구체적으로 상생협력법상 수탁·위탁거래에서 위탁의 내용이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기술개발인 것과 비교하여 보면, 상생협력법은 하도급법과 달리 공사와 기술개발을 별도의 위탁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는 반면,¹²⁾ 하도급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설을 위탁의 내용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차이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공사와 건설 또는 용역과 기술개발은 개념상 중복되는 부분이 크며, 실무적으로 양자의 준별이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또한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의 경우 원사업자에 의한 위탁관계뿐만 아니라 재위탁관계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두 법률 간에 차이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도급법이 최초의 위탁과 다음 단계의 위탁을 모두 포함시키는 기술 방식을 취한 것은 법명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하도급에 한정하지 않고 원사업자부터 이어지는 도급 관계 전체를 규제 범위 안에 두기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상생협력법의 경우 단지 수탁·위탁거래로 정의하는 것만으로 단계적으로 이어지는 위탁관계를 규율 대상에 포섭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도급법과 달리 단일한 방식으로 정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양 법의 규정 방식에 따른 차이가 규제 범위에 의미 있는 차이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양법에서 규율 대상으로 하는 수탁·위탁거래와 하도급거래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는 거래 주체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하도급법 제2조 제2항과 제3항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를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거래 주체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규제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즉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중소기업자가¹³⁾ 아닌 사업자이거나(1호) 중소

관한 법률」 제25조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11) 김홍석·구상모, 「하도급법」, 화산미디어, 2010, 17-18면 참조.

12)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은 가공위탁을 제조위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3) 하도급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

기업자인 경우에도 다른 중소기업자에 비하여 연간매출액이 많으면(2호) 원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고, 제3항에서 수급사업자는 중소기업자에 한정된다. 이에 비하여 전술한 것처럼 수탁·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에는 제한이 없으며, 단지 수탁기업을 중소기업에 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간 거래, 심지어 규모가 더 작은 기업이 위탁 기업으로서 이루어진 거래도 상생협력법에 의한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규정 방식의 비교에 의하면, 상생협력법상 수탁·위탁거래가 하도급법상 하도급 거래보다 넓은 범위를 포괄하게 된다.

(3) 대리점법과의 구별

거래 공정화 관련 법률 중에서 대리점법의 규제 대상과의 비교도 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리점거래는 유통방식의 하나로서 공급업자에 비하여 유통업자가 갖는 자율성 측면에서 가맹사업거래와 구별되는데, 전자는 후자에 비하여 유통업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자율성을 갖는 거래 방식으로 이해된다.¹⁴⁾ 대리점거래는 대리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재판매방식과 위탁판매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리점법은 두 방식 모두를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재판매방식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거래가 판매의 형식에 의하는 것을 말하며, 위탁판매 방식은 양자 간의 관계가 판매의 위임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상생협력법상 수탁·위탁거래는 위탁 내용에서 판매는 제외된 채 정의되고 있으므로, 대리점법과 상생협력법은 규제 대상인 거래가 위탁 행위에 기초한 것은 같지만, 위탁 내용에 판매가 포함되고 있는지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핵심적인 기준인 동항 제1호에 관하여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보충하고 있는데, 특히 동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이 요구되고 있다.

14) 대표적인 유통방식인 대리점 방식(dealership)과 가맹점 방식(franchise)의 구별과 관련하여, 대체로 대리점은 영업의 자율성을 갖는 대신 사업상 위험을 부담하게 되고, 가맹점은 어느 정도 사업의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거래의 특성상 가맹본부에 의한 일정한 구속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Mark Applegate, "Franchise vs. Dealer", in <http://smallbusiness.chron.com/franchise-vs-dealer> 참조.

Ⅲ. 수탁·위탁거래에 기초한 규제 범위의 문제와 개선 방향

1. 통일적 적용의 문제

(1) 문제의 의의

상생협력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수탁·위탁거래는 제4장의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와 관련하여 제21조 내지 제28조의 규제 대상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제3장의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초가 되고 있다. 특히 제8조에 의한 상생협력의 공평한 배분은 수탁·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을 전제하고 있으며, 제17조에서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과 지원에 관한 규정에서 수탁기업도 당연히 수탁·위탁거래에 기초한 개념이다.

이와 같이 수탁·위탁거래는 거래 공정화를 위한 규제 대상뿐만 아니라 상생협력의 정책적 기초로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규제 대상을 정하는 것과 상생협력의 정책을 실현하는 범위를 정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따라서 양자를 동일하게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거래 공정화의 관점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는 거래 유형을 적절히 파악하고, 이를 규제 대상으로 명확히 법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반면 상생협력의 정책 실현의 관점에서는 동 정책의 필요성이 있는 영역과 구체적 대상을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의 기초로서 대상을 확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이해에 의할 경우에, 현재 불공정행위 규제와 상생협력 정책 실현의 대상을 수탁·위탁거래의 단일한 개념에 기초하고 있는 상생협력법 체계를 각각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원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규제 대상으로서 수탁·위탁거래의 개선

우선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규제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대하여 갖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¹⁵⁾ 하도급법이나 대리점법에 의한 규제는 독점규제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규제의 특별법으로서 의의가 있으며,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규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상생협력법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5) 우리나라 하도급법과 유사한 일본의 「下請代金支拂遅延等防止法」의 제정에 있어서 도급인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주된 계기가 되었다는 것으로, 若杉隆平, “不公正な取引方法に關する規制(I): 不當廉買及び優越的地位の濫用, 下請取引 - 「不公正取引の一般指定」と「下請代金支拂遅延等防止法」の考察 - ”, 後藤 晃·鈴村興太郎 編, 「日本の競争政策」, 東京大學出版會, 1999, 106면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상생협력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수탁·위탁거래의 정의가 규제 목적에 충실하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전술한 것처럼 동 규정에 의하면 중소기업 간 수탁·위탁거래의 경우도 포함되며, 위탁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도 거래상 지위남용에 따른 불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 태도가 그 자체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탁·위탁거래에서의 불공정 거래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 연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계가 불공정한 행위의 표지로서 법정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하도급법에서처럼 중소기업 간 수탁·위탁거래에 있어서는 위탁기업이 매출액 등의 지표에서 수탁기업에 비하여 클 경우를 요건으로 하거나, 또는 매출액 등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당해 거래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¹⁶⁾ 등에 한정하여 수탁·위탁거래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3) 정책 실현 대상으로서 수탁·위탁거래의 개선

반면 상생협력의 정책 실현의 기초로서 상생협력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탁·위탁거래는 지나치게 제한적인 것일 수 있다. 특히 동법 제8조에 의한 성과공유제는 수직적 연관 하에 밸류체인으로 이어지는 기업 간 성과의 공평한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¹⁷⁾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 성과공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는 동법 제2조 제4호의 수탁·위탁거래를 넘어서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법 제8조 제1항 제2문은 “이 경우 수탁기업의 범위에는 제2조 제6호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포함한다”고¹⁸⁾ 규정함으로써 정책적 적용 범위를 상생협력법 제2조 제4호의 수탁·위탁거래 이상으로 확대하고 있다. 성과공유제의 정책적 취지를 고려할 때, 이와 같은 확대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수탁·위탁거래에서 성과공유제의

16) 이러한 맥락에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상대적 관계에서 전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홍명수, 앞의 글(주 5), 67면 참조. 이 밖에 위탁기업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거나 다른 대규모회사의 자회사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업 규모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거래상 우월한 지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이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 간 수탁·위탁거래의 문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17) 위평량, “초과이익공유제 검토”, 「철학과 현실」, 제89호(2011), 100-103면 및 Hui Chen, *Supplier Contracts with Profit Sharing, Open-book Costing and Associated Audit Rights*, University of Tennessee, 2005, p. 3 참조.

18)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은 동법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다.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문제는 기업 규모로 제한해서 볼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현행 규정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예를 들어 동법 제2조 제4호의 수탁기업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형태의 수탁·위탁거래에서 성과공유제를 실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수탁·위탁거래의 직접 당사자에 한정하여 공평한 배분의 문제를 다루는 것에는 한계가 따를 수 있다는 점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완제품 생산 기업이 밸류체인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 단계에 있는 사업자들(예를 들어 1차 벤더와 2차 벤더) 간에 수탁·위탁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비용 절감 등의 성과는 완제품 생산 기업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실현되고 가장 많은 성과의 몫이 귀속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완제품 생산 기업까지 성과 공유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탁·위탁거래와 전후방으로 연결되는 거래의 당사자도 포함하는 방식, 예를 들어 수탁·위탁거래 또는 동 거래와 연결되는 거래의 당사자도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성과공유제의 실현에 있어서 주된 방해 요인 중의 하나로 성과의 불확실성 그리고 성과실현에 장기간이 요구되는 반면 수탁기업 입장에서 성과를 위한 비용 지출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시기의 불일치 문제 등이 거론된다는 점에도 주의를 요한다.¹⁹⁾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수탁기업의 연구 개발이나 비용 절감 등에 관한 협력이 실질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안정적인 계획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우에 따라서 일정한 사전 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도 성과공유제의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 도입의 관점에서도 수탁·위탁거래를 중소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폭넓게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소재부품기업법)²⁰⁾ 의한 소재부품기업 지원 제도를 수탁·위탁거래에 기초한 성과공유제와 결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소재부품기업법은 소재·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소재부품전문기업(2조 2호)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한 법으로서,²¹⁾ 투자 지원(8조), 기술 지원(10조), 소재부품전문기업의 설립 지원(11조), 인력 양성 지원(12조) 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갖는 의의와 중요성을 부인할 수 없지만, 소재부품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해당 소재부품의 수요가 뒷받침되어야

19) 홍명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의 의의와 개선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21집 3호(2018), 430-431면 참조.

20) 소재부품기업법은 부칙 제2항에 의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법이기 때문에, 제도의 지속성에 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21) 동법의 소재부품전문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총매출액중 소재·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가목) 그리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나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하고, 또한 개발 과정에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재부품기업법이 소재부품 수요 기업의 역할에 관한 충분한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보완하는 방안의 하나로 상생협력법상 성과공유제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성과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소재부품 개발에 협력하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소재부품의 개발은 기존의 구체적인 수탁·위탁거래를 전제하지 않고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이거나 거래 형성의 가능성이 있는 단계에서의 수탁·위탁거래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수탁기업협의회 규율에서 수탁·위탁거래의 문제

한편 상생협력법 제17조에 근거한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과 지원에 관한 규정에서 수탁·위탁거래를 전제한 수탁기업의 범위는, 비록 동 규정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의 장(제3장)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규제 근거로서 수탁·위탁거래의 정의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정하는 것이 보다 실효성 있는 접근방식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탁기업은 위탁기업과의 관계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하더라도 개별 경제주체의 입장에서 거래 종료의 위험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²²⁾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동 규정은 개별 거래 주체로서 한계를 갖고 있는 열등한 지위의 수탁기업에게 위탁기업과의 거래에서 힘의 대등성을 보완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며,²³⁾ 이러한 지위의 특성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수탁기업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2. 수탁·위탁거래의 확대 문제

이와 관련하여 현행 상생협력법상 수탁·위탁거래의 정의가 상품의 제조 단계만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그러나 상생협력의 정책적 필요성이나 불공정한 거래의 규제 필요성은 유통 단계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법 제2조 제4호의 수탁·위탁거래의 정의에서 위탁의 내용 중 판매 위탁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유통 과정에서 공급업자와 유통업자 간의 관계는 우리 사회에서 전형적으로 갑질 문제가 나타나는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²⁴⁾

22) EU Commission, *Communication Tackling unfair trading practices in the business-to-business food supply chain*, 2014, p. 7.

23) 홍명수, 앞의 글(주 19), 432면 이하 참조.

24)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자의 공약집에서는 “가맹사업, 대규모유통업, 대리점업, 전자상거래 등 고질적인 갑을관계 분야에서의 각종 불공정행위 및 갑질 근절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2017, 43면.

이에 대한 거래 공정화 관점에서의 규제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상생협력의 정책적 관점에서도 공급업자와 유통업자 역시 상생협력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판매 위탁을 포함하는 수탁·위탁거래의 확대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수탁·위탁거래의 범위를 판매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에 관하여 논의할 경우에, 전자상거래와 같은 새로운 판매방식의 확산과 플랫폼 비즈니스로 대표되는 새로운 거래 환경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에 기반한 비즈니스의 장으로서 플랫폼은 참여자들이 상호작용하는 일종의 생태계와 같은 공간이며,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핵심적인 요소로 한다.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는 지속적으로 가치를 제공하는 것에 의하여 이용자들을 유인하고, 적절한 가치배분을 통하여 비즈니스의 기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플랫폼 운영의 핵심은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가 플랫폼에 집중되고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²⁵⁾ 이를 중심으로 플랫폼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에서 우위에 선 사업자에게 플랫폼은 지배력의 새로운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으며,²⁶⁾ 플랫폼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오픈마켓 시장에서 배타적 거래 행위(다른 오픈마켓에 입점한 사업자에 대하여 자신의 오픈마켓 이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 자체는 독점규제법 제3조의2에서 규제하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²⁷⁾ 따라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나는 장으로서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정한 거래에 반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맥락에서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우선 플랫폼 사업자와 여기에 참여하는 공급자 또는 수요자의 관계를 상생협력법상 수탁·위탁거래의 관계로서 파악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인 거래 형태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플랫폼이 발전해 나아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주의를 요구된다. 비록 현재 플랫폼이 대기업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지만, 공공주도형 또는 소비자참여형 등 플랫폼 운영의 개방성과 공정성이 강조되는 새로운 모델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플랫폼의 진화가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플랫폼 거래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수탁·위탁거래의 범위를 판매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전통적인 판매를 상정한 위탁 판매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확대를 시도할 경우에 대리점거래의 공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대리점법과의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하도급법과의 충돌 문제를 상생협력법 제26조 제

25) 송태원,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제한의 우려와 규제방안에 대한 고찰”, 『경제법연구』, 제17권 1호(2018), 108면 참조.

26) Alison Jones & Brenda Sufrin, *EU Competition Law*, Oxford Univ. Press, 2011, pp. 396-397.

27)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22078 판결. 다만 동 판결에서 대법원은 문제가 된 행위가 단기에 행해진 것이므로 배타적거래로서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1항 등에 의하여 입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참고하여, 유사한 방식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접근 방식의 하나로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의 위탁의 내용을 개방적으로 정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현행 상생협력법 제2조 4호의 규정처럼 특정한 위탁 내용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수탁·위탁거래를 정의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거래 양상을 적절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거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품의 제조, 유통 과정에서 업무를 위탁하는 거래”와 같이 개방적으로 수탁·위탁거래를 정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IV. 결론

상생협력법상 거래 공정화를 위한 규제나 성과공유제와 같은 상생협력의 정책 실현은 모두 수탁·위탁거래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규제와 정책 실현의 대상이 단일하게 설정되고 있는 것에는 양자의 관점 모두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생협력법 제2조 제4호의 수탁·위탁거래의 개념은 거래 공정화 관점에서의 규제에 충실하게 정의하고, 동법 제8조에서 성과공유제의 실현 범위는 더욱 폭넓게 수탁·위탁거래를 파악하여 기초로 삼는 것이 타당한 접근 방식이 될 수 있다. 거래 공정화의 관점에서 상생협력법 제2조 제4호의 수탁·위탁거래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서 규제 대상을 정하는 것이므로, 동 개념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특성을 반영하여 규제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공정화를 위한 규제와 상생협력의 필요성이 단지 제조 과정에 한정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유통 과정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제 범위를 확장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가능한 방안의 하나로 위탁의 내용으로서 판매 위탁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동법 제8조의 성과공유제와 관련하여, 그 기초가 되는 수탁·위탁거래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도 존재한다. 즉 현행법은 수탁기업을 중소기업(중견기업까지 확대)에 한정하고 있지만,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성과의 공유 문제는 기업 규모 측면에서 구별하여 볼 것은 아니므로, 수탁·위탁거래 일반으로 확장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나아가 상생협력법 제8조가 직접적인 수탁·위탁거래에 한정하여 운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1차 벤더와 2차 벤더 간에 기술절감과 같은 성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궁극적으로 성과의 실현은 완제품 기업에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성과공유의 실현 범위 안에 이들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소재 부품기업법상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에 대한 지원 문제도 상생협력법상 성과공유제의 틀 안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재부품전문기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재부품 개발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소재부품 수요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제도적으로는 투자비용 지출과 성과의 구체적 실현 사이에 시차를 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상생협력법 제8조의 성과공유제를 원용할 수 있다. 이때 제도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소재부품기업법상 기업을 수탁기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탁·위탁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라도 잠재적 위탁기업의 개념을 통하여 상생협력법 제8조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권오승·홍명수, “경제법학”, 「학문연구의 동향과 쟁점」, 제8집(2018)
- 김홍석·구상모, 「하도급법」, 화산미디어, 2010
- 서완석, “중소기업의 보호와 대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법적 제도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30권 1호(2012)
- 송태원,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제한의 우려와 규제방안에 대한 고찰”, 「경제법연구」, 제17권 1호(2018)
- 위평광, “초과이익공유제 검토”, 「철학과 현실」, 제89호(2011)
- 홍명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의 의의와 개선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21집 3호(2018)
- _____,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따른 위법성 판단 - 불공정성을 중심으로 -”, 「경회법학」, 제50권 3호(2015)
- 谷原修身, 「獨占禁止法の解説」, 一橋出版, 2006
- 若杉隆平, “不公正な取引方法に關する規制(I): 不當廉買及び優越的地位の濫用・下請取引 - 「不公正取引の一般指定」と「下請代金支拂遅延等防止法」の考察 - ”, 後藤晃・鈴村興太郎 編, 「日本の競争政策」, 東京大學出版會, 1999
- Applegate, M., “*Franchise vs. Dealer*”, in <http://smallbusiness.chron.com>
- Chen, H., *Supplier Contracts with Profit Sharing, Open-book Costing and Associated Audit Rights*, University of Tennessee, 2005
- EU Commission, *Communication Tackling unfair trading practices in the business-to-business food supply chain*, 2014
- Jones, A. & Sufrin, B., *EU Competition Law*, Oxford Univ. Press, 2011

[Abstract]

A Study on Improvement in Regulatory Scope of “Act on the Promotion of Collaborative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Medium Enterprises”

Myungsu Hong*²⁸⁾

Under Act on the Promotion of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Medium Enterprises(hereafter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Act), the realization of policies for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such as regulations for fair trade and the performance sharing system, are all based on transaction effected on consignment and commission. However, some questions are being raised about the transaction effected on consignment and commission, which has been set up as a single target for regulatory and policy implementation. In this regard, the concept of transaction effected on consignment and commission under no. 4 Article 2 of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Act faithfully defines regulations in terms of fair trade, and the scope of the performance sharing system in Article 8 of the same Act is more broadly defined, and as such separating the two could be a strong approach. In the light of the fairness of the transaction, transaction effected on consignment and commission under Article 2 of Mutually Beneficial Act is about the abuse of superior trading position, and so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basis of regulation b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perior trading position in this concept. Also, expanding the distribution process to the regulatory scope can be actively considered, since the need for regulation and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between large and small businesses cannot be seen as just limited to the manufacturing process. On the other hand, there is also a need to expand the scope of the transaction effected on consignment and commission in relation to the performance-sharing scheme of Article 8 of the same Act. Although the Mutually Beneficial Act limits commissioned companies t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e issue of sharing of performance arising from transaction effected on consignment and

* Professor, College of Law, Myongji Univ.

commission is not something that should be viewed separate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ize of the entity, so it could be considered positively to expand the scope of transaction effected on consignment and commission to the general level.

<key words>

Mutually Beneficial Act, Transaction Effected on Consignment and Commission, Commissioned Company, OTT Fairness of Trade, Performance Sharing System

